수원시 청렴메아리
〈2021. 12월 2차〉

사람중심 더 큰 수원 더 공정하고 더 청렴한 수원시 만들기에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2 수원시 신년화두 : 愼 終 謨 始 (삼갈 신, 끝날 종, 꾀 모, 처음 시)
맺음을 중시하며, 새로운 시작을 계획

부패·공익신고상담
친절하고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국민콜110 국번없이1398

□ 청렴사회로 가는길 ➡ 매일 실천 청렴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내 용 :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내용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4조) · 공무원이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지방의회의 경우 의장을 말한다)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 위반 소지 사전 차단함으로써, 부패 위험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 -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 상담결과를 기록·관리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정대상기관 : 기관장이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인 기관 - 지정기준 :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예방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감사 또는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질의 & 답변
○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 공무원의 알선·청탁, 금품 등의 수수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보통 감사 또는 윤리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행동강령 위반 신고상담코너를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로 상담 가능함.

청렴 **청렴시책** : 수원시 청렴팀(031-228-2842), **부패청탁금지법 위반신고(국번없이 1398)**
청렴 **공직비리** :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031-228-3073)
※ 부조리 신고를 제외한 **일반 민원은『열린시장실/시장님보세요』이용**